

2019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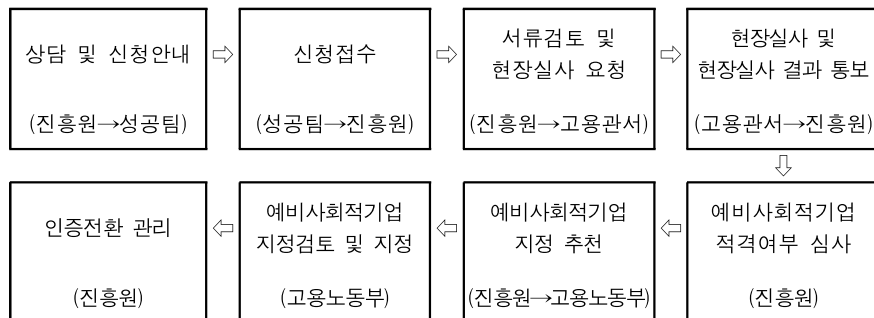
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2. 28.
고용노동부 장관

I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

1. 지정 신청 및 심사

- 신청대상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이하 '진흥원') 주관 '사회적기업가육성 사업'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(이하 '창업성공팀')
- 지정신청: 연중 접수(공고일 ~ 12.31<월>)
- 지정심사: 분기별 심사(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)
- 지정절차:



2.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

* 각 요건별 세부판단기준은 인증심사기준 준용

① 조직형태

- 민법상 법인,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*

*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등
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
② 사회적목적 실현: 창의·혁신형
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,

- 진흥원장이 사회적목적 실현 적정 여부 등을 심사·추천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

③ 영업활동

○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
-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음

- 단,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

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/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(정관 등에 기재)

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3. 제출서류

- 예비사회적기업 추천 신청서
 -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
 -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해당기업)
 - 유급근로자명부(고용보험가입자명부 포함,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)
 - 사업자등록증,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정관·규약(해당기업)
 -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
- * 「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」 상 구비서류 확인

4. 접수처 및 방법

- 접수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- 접수방법: 서식별, 구비서류별 PDF파일로 저장·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신청
 - * 세부 접수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
- 신청기간 : 공고일~12.31 내 상시접수

5. 문의처
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
 - ☎ 031-697-7729, eunsang@ikosea.or.kr
- 부처형 전문지원기관 '(사)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'
 - ☎ 02-365-0330, joyfulunion@naver.com
 - * 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참조

<별지 제2호의9서식>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60일
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		
① 신청기관명 (사업자등록 기준)		② 대 표 자
③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명 (참여 년도)		⑤ 사업자등록번호
④ 연락처(휴대폰)	☎ (FAX.)	
⑥ 소 재 지		
⑦ 조 직 형 태	1.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민법상 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한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합자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민간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비자생활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영농·영어조합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·어업회사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법인, 비영리단체 2. 법령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으로 보는 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문화단체 등)	
⑧ 지정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㉔[], ㉕[], ㉖[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창의·혁신형	
⑨ 유급근로자 수		
⑩ 주된사업내용		
⑪ 업종	⑫ 소속위탁기관	
⑬ 사업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·예술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산림 보전 및 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사 간병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통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
「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을 받고자 추천신청 합니다.		
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(서명 또는 인)		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		
구비서류	1.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2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, 사업자등록증,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필요 시) 3. 유급근로자 관련 확인서류 4부 (해당 기업만) - 1)유급근로자명부, 2)4대보험가입자 명부, 3)근로자 근로계약서, 4)임금대장 4.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해당 기업만) 5. 정관·규약(공증) (해당 기업만) 6.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7.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8. 대표자 이력서 9.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	

(뒤쪽)

❖ 작성방법

- ① 신청기관명
 - 법인(단체)명을 사업자등록증 상호명대로 정확하게 기재
 - * 예시: 주식회사 홍길동 (사오정)
- ② 대표자명
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기재하되,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기재
- ③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창업팀 명(참여년도)
 -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 당시 창업팀명을 기재
- ④ 연락처
 -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되, “()”안에 대표자(또는 담당자) 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 팩스 번호 기재
- ⑤ 사업자등록번호
 -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
- ⑥ 소재지
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재
- ⑦ 조직형태
 - 열거되어 있는 조직형태 중 하나만 선택(중복선택 불가)
- ⑧ 지정 유형
 - “창의·혁신형”에 한해 추천신청 가능(타 유형 선택 불가)
- ⑨ 유급근로자수(해당기업)
 - 추천신청시점의 유급근로자수(고용보험가입자 기준)를 기재
- ⑩ 주된 사업내용
 -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(소설미션)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재
- ⑪ 업종
 - 사업자등록증 상 ‘업태’를 기재
- ⑫ 소속 위탁운영기관
 -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당시 소속되었던 위탁운영기관명 기재
- ⑬ 사업분야
 - 열거되어 있는 사업분야 중 주된 사업분야 하나만 선택(중복선택 불가)

<별지 제2호서식>

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

◆ 기업개요

기업명 (기관명)		대표자	
소재지			
연혁			

◆ 인증요건 충족계획

사회적목적유형 신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☎[], ☎[], ☎[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창의·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
조직형태	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-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
근로자 고용계획	유급근로자 고용 계획(정규직 00명 등)
의사결정구조	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- 이사회(운영위원회) 등 운영 계획
정규약관	정관(규약) 제·개정 계획 - 의사결정구조,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(개정) 계획

◆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(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)

1. 사업 목적 (사업의 필요성)	1-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(소설미션) :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(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) 1-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(사업필요성)
2. 사업 내용 (영업수입 확보방안)	2-1 구체적 사업내용 2-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-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-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-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

◆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(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)

3. 사업 역량	<p>3-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: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</p> <p>3-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: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</p> <p>3-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: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: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</p>
4. 사업 목표	<p>4-1 연차별 매출규모</p> <p>4-2 고용창출 계획</p> <p>4-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</p> <p>4-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</p>

◆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1년차	<p>(예시)</p> <p>- 사업장(사업시설) 확보 및 인력 확충</p>
2년차	<p>(예시)</p> <p>-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</p> <p>- 사업장(지점) 추가 확보</p> <p>-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</p>
3년차	<p>(예시)</p> <p>-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</p>

◆ 기타 추진계획

연계기업,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

*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(필요시 별지작성)